

“공사 현장관리인 의무배치는 과도한 규제”

【춘천】소규모 건축현장에도 1명의 공사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한 현행 건축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춘천시의회 김주열 의장과 변관우 산업위원장은 22일 시청 열린공간에서 성명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의 건수와 면적 현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라고 법제

춘천시의회 성명서 통해 건축법 개정 필요성 주장 시·군의장단協 거쳐 국회·국토부 개선 요구 계획

화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건축법 24조(건축시공)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연면적 495㎡ 이하 일반주택, 661㎡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능사 이

상의 건설기술자를 반드시 고용해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매년 총 1,300여명의 현장관리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력수급이 어려워 사실상 건축 행위를 제한

하는 규제만 될 뿐이라는 게 의회와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또 현장관리인 배치를 강제할 경우 건축주는 월 200만~300만원으로 추산되는 인건비를 준공 시까지 추가로 지출해야 할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는 인력수급 현황에 맞게 1명의 현장관리인이 3~5곳의 공사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열 시의장은 “건축비만 강제로 늘리는 것과 같은 이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건설·건축 경기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더 크다”며 “각 자치단체의 관심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소규모 공사장 현장관리인제도 현실화 촉구

개정 건축법 1인 배치 의무화
지역서 현장관리인 공급 부족
착공 지연·건축비 상승 우려
시의회 “1명 2~3곳 가능해야”

춘천시의회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에 현장관리인을 두는 제도의 완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열 의장과 변관우 산업위원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건축법에 신설된 조항의 개정

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제의 신설 조항은 연면적 661㎡ 미만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미만 주거용 외 건축물 공사장에서 현장관리인(건설기술자) 1명을 배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에서도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정부는 부실 시공이 줄어 건축물의 안전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과 변 위원장은 현장관리인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

해 착공 지연, 건축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법에 1개 공사장에 1명의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역에서 그만큼의 현장관리인을 구하기 힘들다”며 “현장관리인을 못구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1명의 현장관리인이 1개 공사 현장만 전담하면 인건비도 높게 줘야 해 그만큼 건축비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장관리인 1명이 2~3개

현장을 중복으로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없을 것이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낮아져 건축비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도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함종균 춘천시 건축과장은 “이달 초 조항이 신설돼 현장에서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달 초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주들이 공사에 들어갈 내달쯤부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